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4월 29일 06시 29분



목차

목차	2
민원사무편람 및 서식 - 전체	3
사료제조업 승계 신고	3

사료제조업 승계 신고

2017.07.04 조회수 161 등록자 윤성연
10:40

- ✓ 민원사무명
사료제조업 승계 신고

- ✓ 민원내용
「사료관리법」에 따른 사료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30일 이내에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임.

- ✓ 관계법령
사료관리법

- ✓ 구비서류
1. 승계 사유를 적은 서류
2. 승계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- ✓ 처리부서
농업정책과

- ✓ 협의부서

- ✓ 접수
단미사료(여수시 농업정책과), 배합사료(전라남도 축산정책과)

- ✓ 수수료

- ✓ 처리기간
총 3일

- ✓ 기타사항

- ✓ 흐름도
신고서 작성(민원인) > 접수(시, 도) > 검토(시, 도) > 결재(시, 도) > 결과통지(시, 도)

- ✓ 기타참고사항

<p>첨부파일</p> <p>전체(Zip)다운로드</p>	<p> 사료 제조업승계신고서.hwp (1562 hit/ 15.0 KB) ↓ 미리보기</p>
--	---

목록

COPYRIGHT © YEOSU-CITY. ALL RIGHTS RESERVED.

Yeosu Web Contents

